## 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

제정 2019. 5. 10 조례 제3077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공중화장실 등"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.
  - 2. "공중화장실"이란 공중(公衆)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안양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 내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.
  - 3. "개방화장실"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(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)에 설치 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.
  - 4. "불법촬영"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.
  - 5. "불법촬영기기"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 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)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제5조(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)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.
- 제6조(신고체계의 마련)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

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

- 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,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8조(협조)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9조(위탁관리 등)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- 제10조(교육 등)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 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11조(홍보)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·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